

#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상품설명서

◆ 이 설명서는 「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(이하 “리볼빙”)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(이하 “고객”)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- 고객님께서 리볼빙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
## 1 |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.

- 리볼빙 신청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며, 신용카드 신규발급 **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**
- 리볼빙은 대출개념의 결제방식으로 이용 시 **수수료(이자)가 부과됩니다.**
- 결제일에는 **약정하신 비율만큼만 결제**됩니다. **결제비율을 높이려면 별도 약정결제비율 변경을 신청**하세요.
- 리볼빙 이용 중에는 **언제든 일시 상환이 가능**하고, **중도상환해약금도 없습니다.**
- 리볼빙 이용 시엔 **개인신용평점이 하락**할 수 있으며, 약정결제비율을 100% 미만 신청 후 계속 이용하면 **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.**
-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**수수료율(이자율)이 오르거나,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,** 이 경우 고객님께 미리 고지 드립니다.
-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결제대금이 부족**하더라도 **최소결제금액 이상으로 결제되면 나머지 금액은 연체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월**됩니다. 결제일 이후 결제계좌에 부족액을 입금하셔도 **추가 출금되지 않으므로, 영업점, 고객센터,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별도 출금 요청**을 하셔야 합니다.
- 리볼빙 약정해지는 **영업점, 고객센터,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**하실 수 있습니다.

## 2 | 상품 개요

- 리볼빙은 당월 일시불거래 청구금액 중 고객이 은행과 약정한 약정(최소)결제비율 이상을 납부하면 다음 달 결제일에 잔여결제금액과 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.
- 최소결제비율 미만으로 결제 시 그 차액은 연체로 처리되며, **리볼빙 계약 해지 시**에는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으며 **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**

대상 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국내·외 일시불 이용금액 (장기카드대출(카드론),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및 할부 등 일부거래 제외)</li></ul>
약정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신규 약정일로부터 <b>5년</b></li></ul>
약정결제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<b>10 ~ 100% 사이에서 고객이 선택</b> - 고객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로,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선택가능</li></ul>
최소결제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<b>10 ~ 30% 내에서 은행이 정함</b> - 고객이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 -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및 거래행태 등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며, 이후 신용변동 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이 변경·적용될 수 있음(반기, 연장 시 등) - 최소결제비율 적용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으로 계산</li></ul>
수수료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<b>4.5% ~ 18.7% 사이에서 고객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</b>됨 - 신용변동, 금융환경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(반기별)</li></ul>
결제금액 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 안내</li></ul>

### 3 | 거래구조사례 비교

#### □ 리볼빙 약정결제비율별 결제 사례

이용금액 (예시)	적용되는 리볼빙 조건 (예시)
-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: 일시불 100만원 ※ 할부 등 리볼빙 미대상 거래는 사용하지 않음	- 최소결제비율 : 10% - 리볼빙 적용 수수료율 : 연 16% - 리볼빙 연체 수수료율 : 연 19%(적용 수수료율+3%)

#### ○ 전월 이월잔액이 없는 경우 결제일 통장 잔고별 리볼빙 결제 예시

결제일 통장 잔고	약정결제비율 <u>100%</u> 약정	약정결제비율 <u>40%</u> 약정
100만원	100만원 결제, 다음 달 이월 대상액 없음	40만원 출금,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
80만원	80만원 결제, 2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	40만원 출금,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
5만원	<b>[통장 잔고가 최소결제비율(10%) 해당 금액(10만원) 미만]</b> - 최소결제금액 10만원 중 5만원 출금 후, <b>나머지 5만원은 연체</b> (연체 중인 5만원에 연 19%의 연체 수수료율을 <b>연체 해소일</b> 까지 일할계산하여 부과) - 최소결제금액을 제외한 <b>9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</b> (이월된 90만원에 연 16%의 리볼빙 수수료율을 일할계산하여 다음달 결제대금에 포함하여 청구) ※ 최소결제금액 계산 : 청구금액(100만원) × 최소결제비율(10%) = 10만원	

#### ○ 전월 이월잔액(일시불 60만원)이 있는 경우 리볼빙 결제금액 계산 예시

구분	약정결제비율 <u>100%</u> 약정	약정결제비율 <u>40%</u> 약정
리볼빙 약정청구 원금	(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+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) × 약정결제비율  (60만원 + 100만원) × 100% = 160만원 ※ 다음 달 이월금액 없음	(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+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) × 약정결제비율  (60만원 + 100만원) × 40% = 64만원 ※ 160만원 중 64만원을 차감한 96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이월
리볼빙 수수료	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× 수수료율 × 이용경과일수 / 365 (윤년은 366)  60만원 × 16% × 30/365 = 7,890원 (이용경과일수는 30일인 것으로 가정)	
리볼빙 약정결제금액	리볼빙 약정청구 원금 + 리볼빙 수수료  160만원 + 7,890원 = <b>1,607,890원</b>	리볼빙 약정청구 원금 + 리볼빙 수수료  64만원 + 7,890원 = <b>647,890원</b>
리볼빙 최소결제금액	(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+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) × 최소결제비율 + 수수료  (60만원 + 100만원) × 10% + 7,890원 = <b>167,890원</b>	
결제해야할 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번 달 결제해야할 금액 ☞ 약정결제금액(1,607,890원)</li> <li>최소결제금액(167,890원)만 결제 시 ☞ 연체처리 없이 잔여금액(144만원)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리볼빙 수수료 부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번 달 결제해야할 금액 ☞ 약정결제금액(647,890원)</li> <li>최소결제금액(167,890원)만 결제 시 ☞ 연체처리 없이 잔여금액(144만원)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리볼빙 수수료 부과</li> </ul>

#### 4 리볼빙과 유사상품 비교

##### □ 유사 서비스 및 카드대출과 구별되는 특징

구분	리볼빙	할부	장기카드대출(카드론)
대상	당월 결제금액 중 리볼빙 이용 가능금액 전체	결제(일시불) 건별 지정	-
매월 납부금액	약정결제비율 적용 금액 이내에서 최소결제비율 적용 금액 이상 납부	분할금액(정액)	분할상환 등
수수료율	반기별(6개월) 변동	고정	고정
납부 기간	잔액 완제 시 까지	고정	고정

##### □ 유사 서비스 및 카드대출간 2023년 중 신용점수별 평균 수수료율 비교

구분		일시불 거래의 납부 이연서비스		카드대출(대출정보등록·공유)	
		리볼빙	할부(유이자)	현금서비스	카드론
신용점수 (KCB)	900점 초과	12.37%	14.19%	16.13%	8.93%
	701~900점	14.23%	15.25%	17.67%	12.27%
	700점 이하	15.40%	15.64%	18.37%	14.58%

-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: 대출금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일시상환하는 단기대출
-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: 대출금을 매월 분할상환 하는 장기대출(DSR 산정 시 포함)

#### 5 기한 연장 및 계약해지

기한연장	기한 연장이 가능한 고객의 경우 약정기간 <b>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개별통보</b> 하며, <b>약정해지 의사를 표시</b>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<b>자동 연장</b> 됩니다.
계약해지	고객의 계약해지 요청, 회원 탈회, 기한이익의 상실 등 사유 발생 시 리볼빙 계약이 해지되며, 고객에게 <b>이용금액 전액을 청구</b> 할 수 있습니다.

#### 6 연체수수료율 및 기한이익상실

연체 수수료율	리볼빙 수수료율 + 3%p, 법정최고금리(연 20%) 이내 -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시 미결제금액에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체수수료 부과
기한이익의 상실	연속 2회차 이상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등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발생 시 리볼빙 청구액 전액이 <b>일시청구</b> 됩니다.

#### 7 이월잔액 중도 납부 및 연체금액 납부

결제일에 **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** 시 연체처리 되며, 연체금액에 대해 **연체수수료를 지급**해야 하며 최소결제금액을 제외한 **잔여결제대금**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.

**이월잔액은 계좌에서 추가 출금되지 않으므로**, 중도납부 희망 시 **영업점, 고객센터,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** 등을 통해 별도 출금 요청을 해주셔야 하며,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영업점 : 영업점 방문 요청
- 고객센터 : IBK고객센터(☎1566-2566)
- 인터넷뱅킹 : 개인인터넷뱅킹 > 메뉴 > 카드 > 카드결제 > 선결제
- 스마트뱅킹 : i-ONE뱅크(개인) > 메뉴 > 카드 > my > 결제 > 선결제

## 8 |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

-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평가할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리볼빙 수수료 인상,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## 9 | 금리인하요구권

■ 대상

비대상

- 은행과 리볼빙 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『여신전문금융업법』 제50조의13(금리인하요구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**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(예 : 취업, 승진 등 소득·재산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** 은행에 **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**
  - 영업점 : 영업점 방문 요청
  - 고객센터 : IBK고객센터(☎1566-2566)
  - 인터넷뱅킹 : 개인인터넷뱅킹 > 메뉴 > 카드 > 카드금융 >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> 금리인하요구권 > 신청
  - 스마트뱅킹 : i-ONE뱅크(개인) > 메뉴 > 카드 > 금융 >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> 금리인하요구권 > 신청
-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시기, 횟수제한이 없습니다. 다만,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**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- 은행은 **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)에 **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,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**

## 10 |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

-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(☎1566-2566)로 동 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, 민원 발생시에는 **거래 영업점, 금융소비자지원부(☎080-800-0119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.co.kr)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**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처리기한 지연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,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☎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**
-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.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2-729-7490, e-mail : ibkethics@ibk.co.kr)

## 11 | 자료열람요구권

-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,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은행은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「**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**」 시행령 제26조(자료의 기록 및 유지·관리 등)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**

## 12 | 개인신용평가대응권

※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,

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을 요구\*\*하고,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·삭제·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)를 말합니다.

\*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

\*\* 서면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

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, 기초정보가 정정·삭제되었다고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,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.

-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
-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-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

## ※ |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

리볼빙 이월잔액 발생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,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?

- ① 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아니오

은행은 약정기간 종료 도래 시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, 이후 1개월 이내 회원이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약정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약정기간 연장 시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?

- ① 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아니오

결제일 경과 후에는 리볼빙 이월잔액 중도납부를 위해 결제계좌에 해당 금액은 입금하더라도 출금되지 않으므로 은행에 별도로 연락하여 출금 요청해야 하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?

- ① 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아니오

리볼빙 수수료율 및 최소결제비율은 고객님의 신용상태 또는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?

- ① 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아니오

리볼빙 최소결제금액 산출 시에는 전월 리볼빙 이월잔액과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액의 합계에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확인하셨습니까?

- ① 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아니오

본인은 IBK기업은행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을 신청함에 있어 은행 직원 또는 모집인과 상담하여 본 설명서를 교부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고객확인 : 20 . . . . . (서명/인)